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7.

경기도 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, 행정절차법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하○아	78.12.24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연락두절 및 필수 상담일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 및 향후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42번길 14
2	박○영	69.6.27.				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101번길 40

- 4. 공고기간: 2026. 8. 7. ~ 2026. 8. 22.(15일간)
- 5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이윤민(Tel. 031-231-79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